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12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10월 카드 실적 보니...김영란법 소비 위축 영향 제한적
-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간 경찰 신고접수 348건
- NH농협생명, '윤리경영의 날' 맞아 청렴계약 실천 결의
- 철도시설공단, '2016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
- JDC, 동반성장 성과공유 아카데미 개최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GE - 로마에 가도 로마법이 따르지 않는 GE의 윤리경영

3. 청렴 위반 사례

- 인사 부정청탁
- 학교 성적 부정청탁

4.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Part4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10월 카드 실적 보니...김영란법 소비 위축 영향 제한적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의 영향 업종 중 유흥업종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골프장 등의 업종에서는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줄었으나, 개인카드의 승인금액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늘어났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는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를 지난 25일 발표하고, "전체 카드 승인 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이 작고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승인금액 축소가 전반적인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 금액 대비 법인카드 승인금액의 비중은 16.8%에 불과하다.

(단위: 억원, %)

업종		15년 10월	16년 10월	증감율
일반 음식점	개인	61,998	67,993	9.7
	법인	13,945	13,924	-0.2
유흥 주점	개인	2,970	2,903	-2.3
	법인	1,005	853	-15.1
골프장	개인	2,938	3,114	7.0
	법인	1,868	1,720	-7.9

자료 : 여신금융연구소

일반음식점의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지난해 10월보다 7.9% 증가하였으며, 골프장의 전체 카드 승인 금액도 1.2% 증가하였다. 다만, 유흥주점의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5.5% 줄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5/2016112501523.html

2.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간 경찰 신고접수 348건

청탁금지법 도입 2개월간 경찰에 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9월 28일부터 이당 27일까지 서면신고 16건과 122신고 332건을 포함하여 총 34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지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주택의 측량 처리를 요구하며 탁자 위에 100만 2천원을 두고 간 사건도 있었으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법 적용 초기에는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 4만 5천원어치를 보낸 민원인이 과태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12신고는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 출동은 1건 밖에 없었으며, 경찰은 법 적용 전부터 112신고는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비출동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 도입 첫 1개월간은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39건으로 신고가 몰렸다가, 2개월 차에 접어들자 서면 4건·112신고 4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상담신고가 집중됐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며 "수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법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8/02000000000AKR20161128065200004.HTML?input=1195m>

최근 동향 및 소식

3. NH농협생명, ‘윤리경영의 날’ 맞아 청렴계약 실천 결의

지난 2일, NH농협생명이 ‘윤리경영의 날’ 을 맞아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NH농협생명 준법감시부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청렴 프런티어단 위원과 계약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청렴계약제’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위해 공사·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부당한 이익의 요구 및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양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NH농협금융지주 산하 계열사 전 임직원들이 ‘NH-PAY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NH-PAY 운동’은 ‘작은 금액이라도 나눠 계산하는 것을 새로운(New) 습관(Habit)으로 정착시켜 불합리한 접대 문화 관행을 타파하자’는 농협금융의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중 하나다.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은 “농협생명은 계약과정에서 청렴계약 실천 및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청렴보험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6>

4. 철도시설공단, ‘2016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영일 이사장은 “다양한 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자와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문화를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으로 정부3.0 핵심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운하 대표는 “단순한 시장점유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며 “파나소닉코리아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공헌할 수 있는걸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88>

5. JDC, 동반성장 성과공유 아카데미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동반성장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성과공유제 이행을 제고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앞으로도 JDC는 기업 간 교류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15809>

윤리경영 실천 사례

GE - 로마에 가도 로마법이 통하지 않는 GE의 윤리경영

1. GE의 윤리경영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해외 고객을 GE의 교육 시설에 초대한 후 이 고객이 주말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잠깐 방문하고 싶어한다면, GE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는 고객이 공무원인지 여부, 현지 법률 및 고객의 정책, GE의 사업지침과 다른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GE의 법률 고문 및 상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기업 GE에 입사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이다. GE는 올해로 133살이 된 기업으로, 1878년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한 후 1898년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선정한 최초의 우량기업 12곳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12개의 기업들 중 아직까지 생존하는 기업은 GE가 유일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GE가 133년의 세월을 거치며 성장하며 발전을 거듭해온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GE의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하나는 ‘항상 변한다(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과 성실성은 최고의 가치다(철저한 윤리경영)’이라고 한다. 실제로 GE에서 윤리경영은 타협이 불가능한 불변의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GE의 철저한 윤리경영 준수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GE의 한 HR 매니저가 직원과 식사하고 비용인 50달러를 회계부서에 청구할 때, 식사한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된 사건이며, 이 HR 매니저가 청구서에 기재한 직원이 당시 다른 나라에 출장중이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밝혀져, 액수는 작았지만 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인사 매니저가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을 받았다

. GE는 매출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기회를 주지만, 윤리규정은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2. GE의 윤리 및 규정과 관련된 14개 정책

GE는 전 세계의 100여 개 사업장 어디서라도, 30만 여명의 직원들은 똑같은 원칙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GE의 윤리경영 실천을 담은 윤리강령을 ‘The Spirit and The Letter’라고 부른다. ‘The Spirit’이란, GE가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정신을 의미하며, ‘The Letter’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체계 혹은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The Spirit & The Letter	
고객 및 공급업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지급(Improper Payment) •공급업체와의 관계 •국제 거래 규정 •돈 세탁 방지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법의 준수
정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기관과의 업무
GE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고용(Fair Employment)정책 •환경, 보건 및 안전 •보안 및 위기 관리
GE 자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 재산 •재무관리 및 기록 (Controllershship) •이해관계 상충 •내부자 거래 및 주식정보 누설

이는 전 세계 30만 여명의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된 책자의 이름과 같으며, 이러한 GE의 청렴과 성실성에 대한 실천을 위해 전 세계 직원은 매년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개인 서약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3. 두 번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GE의 One Strike=out 원칙

직원 서약 이외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준법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과 고객 및 업무의 유형에 따라 발생한 사례위주로 진행되며,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실적 달성도 준법과 윤리경영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GE에서 해고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GE만의 One Strike-out 원칙이다.

4.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실천을 담보하는 프로세스 구축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두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과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언론 기사를 흔치 않게 접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리강령의 제정, 전담 팀의 신설 및 강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윤리경영의 실천에 대한 의문이 들 때 평소의 최고경영자의 언행에서 각 기업의 윤리강령 실천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 및 준법경영이 일상 업무 속에 뿌리내려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내감사, 월간 준법 정책 회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검토회의, 연간 준법 정책 준수점검절차 등 프로세스를 통한 점검과 이행이 필요하다.

5. 직원 개인의 제보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열린 문화와 시스템

GE는 익명으로 준법 관련 의문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 일명 '옴부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 시스템을 통해 제기되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조직이 건 강하다고 GE는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건수가 너무 적으면 준법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옴부즈 시스템은 옴부즈인(Ombuds Person)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다. 영업, 제조 등의 여러 부서에서 선발된 옴부즈인은 제보를 분류하고, 법무팀에 전달한다. 준법과 윤리규정을 위반한 제보의 경우, 제보자를 보호하며 중립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교육을 받게 되며, 이렇게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옴부즈인 제도를 통하여, 누구든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준법 관련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6. 리더의 솔선수범

GE는 리더가 변해야 조직에 준법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신념 하에 리더의 솔선수범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준법경영의 이행 책임자는 준법감시인이나 사내 변호사가 아닌, 바로 사업을 운영하는 리더들 자신이며, 교육훈련 시 대상자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부의 리더가 준법의 중요성, 준법 내용, 준법의 핵심 등을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이야기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점이다. 또한 리더의 책무는 본인의 윤리경영 준수는 물론, 자신이 책임지는 조직 내에 준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GE의 윤리경영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아닌 GE법을 따른다'는 분명한 원칙과 체계화된 규정과 프로세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등 모든 직원이 똑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GE코리아 공식블로그

<http://geblog.kr/130171490500?Redirect=Log&from=postView>

"쉽고 명쾌한 윤리서약, 여기면 해고!" 30만 GE가족은 똑같은 '계명'을 공유한다

http://www.dongabiz.com/CaseStudy/Article/Article_Sub/article_content.php?atno=1901000901&chap_no=1

청렴 위반 사례

1 인사 부정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국장 B는 자녀A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 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시사점 :

- ①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의 위반도 포함
- ③ 국장 B의 자녀 A는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⑤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학교 성적 부정청탁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으며, 동일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인지하고 동료 수학과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경우

시사점 :

- ①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학교 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③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④ 동료 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지식마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Part4

스마트휘슬 윤리경영 뉴스레터 11월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12월호에서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

1)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의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2) ‘동일인’ 과 ‘1회’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동일인 여부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아닌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출처(Source)’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법 제8조 제5항의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함.
→ 단 법인은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수 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3) 회계연도

-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는 1월 1일에 시작하나 학교는 3월 1일에 시작

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규정에서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
- 형법의 ‘직무에 관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원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5)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6) 금지 행위

- 공직자 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함
- 제공자 등의 경우 공직자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

7)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수수 금지

지식마당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함.

No.	예외사유
제1호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들이 제공하는 금품 등
제2호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제3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제4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제5호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제6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제7호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등을 통하여 받는 상품
제8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 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의무
- 자신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함
- 공직자 등이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2)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 공직자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 해당 공직자 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가능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외부강의등의 범위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2)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들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공직자들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함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였으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였으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국민권익위원회)

Quiz

1. 다음 중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1회 3만원 이상 또는 2회 5만원 이상이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② 1회 5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③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④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2.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산적 이익
 - ② 경제적 불이익
 - ③ 경제적 이익
 - ④ 편의 제공

3.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②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 ③ 기관이나 하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
 - ④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4.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와 다른 것은?
 - ① 공직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②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금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공직자 등이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답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답 ②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4. 답 ④ 부정청탁을 신고한 제3자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관련 행사

1. 현대글로비스, '한국윤리경영대상' 대상 수상

글로벌 종합물류유통기업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1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제26회 한국윤리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9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지표인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와 'DJSI 코리아 지수'에 국내 물류기업으로는 최초로 2년 연속 동시에 편입되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폭넓은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130946001&code=920508

2. 윤경SM포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CEO클럽 강연 개최

산업정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윤경 SM포럼 CEO 클럽 강연을 지난 11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강연은 윤경SM포럼 회원 기업의 청탁금지법과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의자가 반영되어 개최되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248>

3. 대전상의, 30일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대전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대전광역시 청렴 시정 정책 소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반부패 국제동향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준법윤리경영시스템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업 등의 준법윤리경영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http://www.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519>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